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안)

우편번호	43010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 11길 93			
홈페이지	http://www.dgsw.dge.hs.kr			
전 화 번호	교장실	231-9210	교무실	231-9226
	행정실	231-9215	입학상담	231-9218
	FAX	614-0709		231-9219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안)

※ 본 입학전형 요강은 작년과 비교해서 개정된 내용이며, 현재 교육청에 개정(안)에 대해서 승인요청 중입니다. 최종 확정된 요강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7월 중순 경에 탑재될 예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 등의 유행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입학전형일 및 전형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체 방안 등은 별도 공지

1. 모집학과 및 정원(남녀공학): 72명

가. 모집학과

구 분 \ 학 과	공통과정
학급수	4

※ 2학년 진급 시 절차에 따라 학과 선택 및 배정

구 분 \ 학 과	2~3학년		
	소프트웨어개발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학급수	2	1	1

나. 모집정원

(단위: 명)

구분	인원	
일반전형	41(57%)	
특별전형	마이스터인재전형	20(28%)
	지역우선전형	4(5%)
	사회통합전형	7(10%)
계	72	

다. 모집 대상 지역: 전국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인터넷)	2023.10.16.(월) ~ 10.19.(목) 17:00까지	입학원서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이용)
서류 제출	2023.10.16.(월) ~ 10.19.(목) 17:00까지	10.16.(월) ~ 10.19.(목) 17:00 도착분까지만 인정(우편 또는 방문)
1차 합격자 발표 (1차전형)	2023.10.25.(수) 10:00	학교 홈페이지
2차 전형	2023.10.27.(금) 10:30 ~ 18:00	학교 지정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 (1차전형+2차전형)	2023.11.1.(수) 10:00	학교 홈페이지, 최종합격자는 2023. 11. 9.(목)까지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 를 학교 교무센터로 우편, 팩스, 방문 제출

※ 최종합격자는 전원 기숙사 입소 의무를 갖고, 기숙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p>소프트웨어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고 본교 졸업 후 전공분야에 취업할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 자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마이스터인재전형	<p>소프트웨어분야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서는 입학원서 출력 시 함께 출력됨)</p>
사회통합전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정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나) 교육급여수급자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나. 인정 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차상위계층: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비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2)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2.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 가능 나.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대한 증명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 적용([덧붙임 1] 참조) 다. 대상 <p>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해당되면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2)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4) 아동복지시설수용자(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 5)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6) 순직 공무원의 자녀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가족 구성원 8)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p>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중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p> <p>9) 직업군인(준사관 이하) 자녀 10) 경찰(경사 이하)·소방(소방장 이하)·교정(교위 이하) 공무원 자녀 11)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12) 환경미화원 자녀 13) 우편집배원 자녀 14) 무형문화재보유자 자녀 15) 입양자녀·입양가족 자녀 16) 한부모가정 자녀(기타) 17) 다자녀가정(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18)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 4호)</p>
지역우선전형	<p>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p> <p>2.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로서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p>
특례입학 대상자	<p>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p> <p>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p> <p>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p> <p>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p> <p>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p> <p>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p> <p>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p> <hr/> <p>※ 특례입학 대상자 선발 방법</p> <p>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모집 정원 내에서 선발</p> <p>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모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p>
국가보훈대상자	<p>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하되, 기회균등전형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전체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p>

4. 지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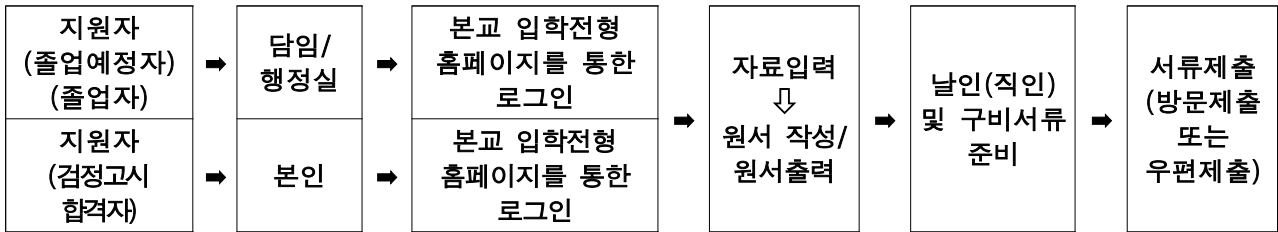
가. 본교 입학전형 홈페이지(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접속)를 통하여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성적(성취도, 출결, 봉사활동, 가산점)을 입력 후 제출

- 1) **체육예술 교과 등 성적이 3등급 (A(우수), B(보통), C(미흡)) 평가로 나오는 교과의 성적도 입력함.**
- 2)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서 보훈번호를 확인 후 보훈번호를 입력

나. 본교 입학전형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 제출 후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해당란에 서명을 하고 학교장 직인을 득한 후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방문) 제출

다. 기재사항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모두 지원자에게 있음

라. 지원 절차



5. 제출서류

전형구분	서류목록	
공통 (모든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입학전형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입학원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내 증명사진 스캔 후 입학전형 홈페이지에 입력 - 단면 인쇄, 칼라 또는 흑백 인쇄 ○ 성적일람표 1부(입학원서 출력 시 함께 출력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입학원서 출력 시 함께 출력됨) ○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1부(원본대조필, 졸업예정자의 마감기준일은 2023.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점 대상자는 해당 항목에 형광펜으로 표시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부(입학원서 출력 시 함께 출력됨)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성적증명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발행), 주민등록등본 각 1부 	
특별전형	특별전형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추천서 1부(입학원서 출력 시 함께 출력됨)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및 성적증명서로 대체
	사회통합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부모 확인서 : [덧붙임3] 참조(입학원서 출력 시 함께 출력됨) ○ 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 : [덧붙임2] 참조
	지역우선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 : 주민등록등본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점대상자 : 상장/임명장 사본 1부(원본대조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것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에 형광펜으로 표시) 특례입학 대상자 제출 서류 : [덧붙임4] 참조 기타 지원 자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최종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합격자는 11. 9.(목)까지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를 학교 지정 장소(우편, 팩스, 방문)에 제출, 미제출시 기숙사 입소 불가 및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진단서 필수 항목: 시력·청력 검사결과, 흉부 X선(결핵 검사), 감염성 피부질환, B형 간염 ※ 최종합격자의 건강진단서 중 감염성 피부질환의 경우 의사의 진찰(문진) 후 이상유무가 기재돼 있어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6. 성적산출

가. 전형별 성적 반영비율

1) 재학생 및 졸업생

성적 요소 전형 구분		1차 전형(%)				1차 전형 총점	2차 전형(%)			2차 전형 총점
		교과 성적	출 결	봉사 활동	가산점		1차전형 성적	직무적성 소양평가	심층 면접	
일반전형							40	20	40	
특별 전형	지역우선 전형	80	10	6	4	100	20	20	60	100
	사회통합 전형									
	마이스터 인재전형									

※ 출결, 봉사활동, 모범상 가산점의 적용 기준일은 2023.09.30., 교과성적 및 리더십 가산점은 3학년 1학기(단,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하며, 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검정고시 합격자

성적 요소 전형 구분		1차 전형(%)				1차 전형 총점	2차 전형(%)			2차 전형 총점
		교과 성적	출 결	봉사 활동	가산점		1차전형 성적	직무적성 소양평가	심층 면접	
일반전형							40	20	40	
특별 전형	지역우선 전형	100	-	-	-	100	20	20	60	100
	사회통합 전형									
	마이스터 인재전형									

나. 1차 전형 영역별 성적산출

1) 교과성적

가)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성적을 반영

나) 체육·예술 교과 등 성적이 3등급 (A(우수), B(보통), C(미흡)) 평가로 나오는 교과의 성적도 입력함.

다) 교과성적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동일 :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의 비중으로 산출

구분	산출 공식	점수
재학생	$0.8 \times \left[2 \times \frac{A_{11}}{N_{11}} + 2 \times \frac{A_{12}}{N_{12}} + 3 \times \frac{A_{21}}{N_{21}} + 3 \times \frac{A_{22}}{N_{22}} + 10 \times \frac{A_{31}}{N_{31}} \right]$	80점 만점
졸업생	$0.8 \times \left[2 \times \frac{A_{11}}{N_{11}} + 2 \times \frac{A_{12}}{N_{12}} + 3 \times \frac{A_{21}}{N_{21}} + 3 \times \frac{A_{22}}{N_{22}} + 5 \times \frac{A_{31}}{N_{31}} + 5 \times \frac{A_{32}}{N_{32}} \right]$	80점 만점
검정고시합격자	$20 \times \left[\left(\frac{A}{N} \right) \right]$	100점 만점

※ 단, 성취도에 'P' 로 기록된 교과는 교과성적에 반영하지 않음.

(2) 산출공식의 적용

① 재학생

㉠ A_{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수학, 과학, 기술·가정 과목은 각 과목별 환산점×2한 값)의 총합, A=5, B=4, C=3, D=2, E=1)

㉡ N_{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과목수(수학, 과학, 기술·가정 과목은 과목수를 2배로 함))

② 졸업생

㉠ A_{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수학, 과학, 기술·가정 과목은 각 과목별 환산점×2한 값)의 총합, A/수=5, B/우=4, C/미=3, D/양=2, E/가=1)

㉡ N_{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과목수(수학, 과학, 기술·가정 과목은 과목수를 2배로 함))

③ 검정고시 합격자

㉠ A : (취득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검정고시합격자 과목별 점수	100점이하 98점이상	98점 미만 94점 이상	94점 미만 90점 이상	90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환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N : (이수한 과목수)

라) 중학교 자유학기제(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학교 학생의 교과성적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다'의 방법에서 성적이 없는 학기(또는 학년)는 제외하고 성적을 산출 후 성적이 있는 학년 및 학기의 반영비율을 100%로 하여 전형의 만점 비율로 성적을 적용

(2) 예 : 2학년 성적이 없는 일반 및 특별전형 재학생의 경우 산출 방법

$$0.8 \times \left[\frac{100}{70} \times \left(2 \times \frac{A_{11}}{N_{11}} + 2 \times \frac{A_{12}}{N_{12}} + 10 \times \frac{A_{31}}{N_{31}} \right) \right]$$

1학년 성적이 없는 일반 및 특별전형 재학생의 경우 산출 방법

$$0.8 \times \left[\frac{100}{80} \times \left(3 \times \frac{A_{21}}{N_{21}} + 3 \times \frac{A_{22}}{N_{22}} + 10 \times \frac{A_{31}}{N_{31}} \right) \right]$$

마) 평가 영역 및 반영 비율

지원전형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방법	배점
일반전형	교과 성적	교과 성적 점수 환산	서류 평가	100점
지역우선전형, 사회통합전형, 마이스터인재전형				

2) 출결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졸업 예정자는 2023.09.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1) 점수 산출 방법 : $[10 - \text{미인정결석일수} \times 2]$ 점(단, 미인정결석일수가 5일 이상이면 5일 산정함)

(2) 미인정결석일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① **3개 학년**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횃수를 합산하여 미인정결석일수를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로 인한 횃수는 미인정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②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는 그 횃수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2회 이하는 버림)

3) 봉사활동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기준일: **졸업 예정자는 2023.09.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나) 교내·외 봉사활동은 학년별로 최대 1학년 2.4점(5시간), 2학년 2.4점(5시간), 3학년 1.2점(10시간)까지만 인정하여 총 6점까지 반영

다) **2023년 2월 중학교 졸업자의 봉사활동 성적: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중 봉사활동 기준 적용**

※ 이전 졸업자의 봉사활동 성적: 해당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기준 적용

라) **2024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봉사활동 성적**

[2024년 2월 졸업예정자(현재 3학년) 기준 봉사성적 산출기준]

2021학년도(1학년)		2022학년도(2학년)		2023학년도(3학년)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5시간 이상	2.4점	5시간 이상	2.4점	10시간 이상	1.2점
5시간 미만	2점	5시간 미만	2점	10시간 미만	1점
3시간 이상		3시간 이상		7시간 이상	
3시간 미만	1.6점	3시간 미만	1.6점	7시간 미만	0.8점

4) 가산점

가) 리더십 가산점(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 한 학기 이상 학생회 임원(전교 학생회장, 전교 학생부회장, 학급반장)으로 활동한 경우 학기 당 1회에 0.5점을 부여(최대 2점)
- 리더십 가산점에서 재학생(중학교 3학년)의 경우 1학기만 인정함.

나) 모범상 가산점(졸업 예정자는 2023.09.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 중학교 재학 중 교내에서 모범(모범, 선행, 효행, 공로, 노력 등)상을 수상한 경우 1회에 1점을 부여(최대 2점)
- 위 명칭 이외의 모범(생활성적에 반영되는)상의 경우 반드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문)를 첨부해야함(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과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다. 2차 전형 영역별 성적산출

1) 1차 전형 성적

지원전형		반영 비율
일반전형,		40%
특별전형	지역우선전형, 사회통합전형, 마이스터인재전형	20%

2) 직무적성소양 평가

지원전형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방법	배점	반영비율
일반전형, 지역우선전형, 사회통합전형 마이스터인재 전형	직무적성	- 미래 소프트웨어 분야의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직무 적성 능력 - 언어, 수리, 공간, 집중, 직업 흥미 등을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	선택형	100점	20%

3) 심층면접

가) 학업 및 진로 계획, 소질, 적성, 컴퓨팅 사고력 역량 등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여 미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

나) 평가 영역

지원전형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방법	배점
일반전형, 지역우선전형, 사회통합전형 마이스터인재 전형	학업 및 진로 역량	생활기록부 ,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	개인 또는 집단 면접	100점
	컴퓨팅 사고력 역량	- 정보 처리에 관한 기본 능력 - 알고리즘 구현 능력 - 블록 코딩 문제 해결 - SW개발 문제 해결 능력	제시문 기반 심층 면접	100점

다) 반영 비율

지원전형	반영비율	
	학업 및 진로 역량	컴퓨팅 사고력 역량
일반전형	20%	20%
지역우선전형, 사회통합전형	40%	20%
마이스터인재전형	20%	40%

라) 각 전형별 평가 방법은 동일하며 받은 총점에서 전형별 반영비율로 환산함

7. 합격자 선정 방법

가. 1차 합격자

- 1) 특별전형의 1차 전형 합격자를 먼저 선발한 후, 불합격자는 일반전형의 1차 전형 지원자로 전환하여 일반전형 1차 전형 합격자를 선발
- 2) 특별전형
 - 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전형별 모집정원의 **2배수** 선발(동점자 포함)
 - 나) 전형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 미충원 인원만큼 일반전형의 1차 전형 모집인원에 추가
- 3) 일반전형
 - 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 선발(동점자 포함)
 - 나) 특별전형에서 일반전형으로 전환된 자는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성적산출
- 4) 1차 합격자는 반드시 2차 전형에 응시하여야 함,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5) 1차 합격자는 입학사이트와 각 중학교로 통보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나. 2차 합격자

- 1) 2차 전형 응시자는 1차 합격자에 한함
- 2) 특별전형 합격자를 먼저 선발한 후, 불합격자는 일반전형의 지원자로 전환하여 일반전형 합격자를 선발
- 3) 특별전형
 - 가) 2차 전형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전형별 모집정원**을 선발함
 - 나) 특별전형 합격자가 전형별 모집정원 미만인 경우, 미충원 인원만큼 일반전형의 모집정원에 추가
- 4) 일반전형
 - 가) 2차 전형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모집정원**을 선발함
 - 나) 특별전형 지원에서 일반전형 지원으로 전환된 자는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성적산출
- 5) 동점자는 심층면접, 출결, 교과성적(3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직무적성소양 평가 점수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8. 신체검사

가. 합격자 배제 조건

- 1) 좌·우 교정시력이 모두 0.3 미만인 자
- 2)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하여 실습에 지장이 있는 자
- 3) 상·하지의 기능 장애로 실습 등에 지장이 있는 자
- 4) 학업수행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과 정신 질환 및 법정전염병이 있는 자

나. 이상 소견 발생 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

9. 기타사항

가. 각종 특전

- 1) 3년간 학비(입학금, 수업료) 면제
- 2) 전원 기숙사 생활, 기숙사비(식비 제외) 면제
- 3) 우수학생 방과후 활동비 및 국내·외 산업체 연수 경비 지원
- 4) 개발용 노트북 지원
- 5) 국제 자격증 취득 지원
- 6) 우수기업체 취업 지원
- 7) 선 취업 후 대학 진학 가능

나. 기타

- 1)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름
- 2) 본교 지원자는 전국 소재 마이스터고에 이중 지원(지원 시 불합격 처리)할 수 없으며 본교 합격자(등록 포기자 포함)는 2024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에 신입생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3) 증명서 위조 등 부정입학의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4)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결과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5)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6) 제출된 서류는 입학전형 업무 및 합격 후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반환하지 않음

10. 코로나 관련 유의사항

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도 응시 가능하며, 2024학년도 입학전형 안전관리 계획 수립 후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11. 입학 관련 문의

가. 학교 홈페이지 : www.dgsw.dge.hs.kr

(입학전형 홈페이지는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접속)

나. 입학관련 문의 : 053) 231 - 9218, 9219 팩스 : 053) 614-0709

다. 주소 : (430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 11길 93

덧붙임 1

2024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소득 8분위 확인 기준표

□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30,000	197,299	157,523	200,343
3인	7,096,000	255,791	229,312	261,015
4인	8,642,000	309,670	293,801	320,126
5인	10,130,000	359,887	354,030	379,133
6인	11,565,000	434,962	436,179	476,875
7인	12,973,000	476,875	481,248	521,613
8인	14,380,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5,787,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7,194,000	625,329	628,210	729,187

※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예1) 조모, 부, 모, 신청 학생, 동생이 있을 경우 ⇒ 가구원수는 4명(조모 제외)

(예2) 외조모, 신청 학생, 동생인 경우⇒가구원수는 3명(부모가 없으므로 외조모 포함)

※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적용) 부모가 각자의 건강보험에 별도의 부양자로서 가입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부모가 모두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혼합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 부모가 모두 피부양자로 조회된 경우로서 부모가 해당 학생의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양자인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대상자		제출 서류	발급처	
공통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학부모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덧붙임 3>	
기회 균등 전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우선돌봄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구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차상위계층		교육비지원확인서	해당 학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또는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 곤란자		학교장 추천서, 관련 증빙서류		
공통	지역건강보험료	1.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3 ~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증 사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후 (당일) 재발급 가능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1.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3 ~ 6개월 평균 납부액)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결과 통지서	관할 교육(지원)청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청, 통일부	
사회 다양성 전형	다문화가정 자녀		1. 혼인관계증명서(부모), 2.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해당자), 3. 귀화증명서(해당자)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아동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소년소녀가장		추가 서류 없음	
	조손가정 자녀		추가 서류 없음	
	순직 공무원의 자녀		순직 확인서	
	장애인 가정 가족 구성원		장애인 등록증(또는 증명서)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증명서(졸업자에 한함)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의 자녀		재직증명서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관련 사실(보상) 확인서	
	환경미화원, 우편집배원 자녀		재직증명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무형문화재 인증서	
	입양 가정 가족 구성원		입양사실확인서	
	한부모가정 자녀(기타)		추가 서류 없음	
	다자녀가정(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추가 서류 없음	

※ 제출 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학교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덧붙임 4

해외 귀국학생 및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 서류

해당자 구분 구비서류	외국에서 9년이상 (초중과정) 이수한 학생 (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 학생 (제2호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4호)	비 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소 학년 성적(재학)증명서	○	○	○	○	○		재학학년(기간) 명시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의 관리)증명서		○	○				최종 재학년월일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 (학생)	○ (학생)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재외동포 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재외공관 발행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처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 발급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부,모,학생)	○ (학생)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발급
새터민 등록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발급
학력확인서	○					○	해당 행정구청 발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해당 행정구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	○					○	해당 교육청 발급

※ (○)는 해당자에 한함

※ 영문 및 한글 이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